

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

의안 번호	133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2004. 1. 27.

제 출 자 김철홍 의원 등 9인

□ 제안이유

- 성남시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칙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함(안 제2조)
- 전자 표결에 의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(안 제3조제2항).
-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음(안 제4조제1항)
- 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찬성, 반대 버튼을 누름(안 제4조제3항)
-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함(안 제5조)

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 관한규칙안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.

제3조 (표결방법)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
②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.

제4조 (투표방법) ①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.
②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 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.
③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찬성, 반대 버튼을 누른다.
④투표시간 내 찬성, 반대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.
⑤투표시간 내 찬성, 반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된다.

제5조 (투표시간)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한다.

제6조 (투표결과 및 선포) 투표가 종료되고 별표1의 개표결과 집계표가 출력되면 의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선포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별표1 】

개 표 결 과 집 계 표

날 자 : 년 월 일

○ 안 건 명 :

○ 재 적 의 원 : 명

○ 재 석 의 원 : 명

○ 투표시작시간 : 시 분 초

○ 투표종료시간 : 시 분 초

○ 개 표 결 과 : (가결), (부결)

● 찬 성 : 명

● 반 대 : 명

● 기 권 : 명

성남시의회 의장 (인)

울산광역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정 [1997.7.15] 규정 제2호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에 규정된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) 안건의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3 조 (방법) ①의장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회사무처 직원이 조작한다.

②투표참석 의원은 회의진행에 따라 전자장치 기기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.

③투표시작 선포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.

④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찬성, 반대 버튼을 누른다.

⑤투표시간내 찬성, 반대 어느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이 된다.

⑥투표시간내 찬성, 반대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.

제 4 조 (투표시간) 전자투표 시간은 20초동안 실시한다.

제 5 조 (투표결과 및 선포) 투표가 종료되고 별표1의 개표결과 집계표가 출력되면 의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선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